

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

- 국세청, 2020. 11

-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.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'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,
 -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친인척 금융조회,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·환수하고 있습니다.
-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.
 -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,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,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- 아울러,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1.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운영 배경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,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 - 명단공개 전에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1)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

회 등 확충된 인프라2)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

- 1) 출국금지,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, 체납자료 제공, 관허사업제한 등
 - 2) 친인척 금융조회('19. 12. 27.), 여권 미소지자 출국금지('19. 12. 24.), 감치제도('20. 1. 1.)
- 지난해 말 기준(누계) 고액·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6,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

〈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(국세기본법 제85조의5) 〉

◎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

-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을 공개

◎ 고액·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확인방법

- 인터넷 :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

* 정보공개 ≫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≫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

☞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/ 지도공개 / 업종별 공개(법인)

- 모바일 : 모바일 국세청(어플) ≫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≫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(바로가기)

-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-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,
 - 신고 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, 이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입니다.

〈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징수금액〉

연 도	합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징수금액(억 원)	401	79	78	88	81	75

II.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개요 및 신고 절차

- 국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
 - 징수금액에 5~20%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

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〉

징수금액	지급률
5천만 원 미만	지급하지 않음
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	100분의 20
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	1억 원 +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
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	3억 2천 5백만 원 +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
30억 원 초과	4억 2천 5백만 원 +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

●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, 예금, 주식,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·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.

○ 다음은 신고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.(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)

- ①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(국세징수법 제30조)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
- ②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
- ③ 그 밖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(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,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)

- 이외에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*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* 금액기준의 하향을 추진 중(징수금액 5천만 원 이상 → 1천만 원 이상)

●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·팩스(지방청·세무서), 전화(국번 없이 126) 또는 인터넷(국세청 누리집)를 통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(참고 붙임 2)

- ①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
- ② 서명(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),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
- 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

●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소관부서(지방청 체납추적과)의 검토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,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됩니다.

○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,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
●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

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
Ⅲ.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추진

- 고액·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,
 - 올해 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현재 징수금액 5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〈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개정안 제출(’20.2월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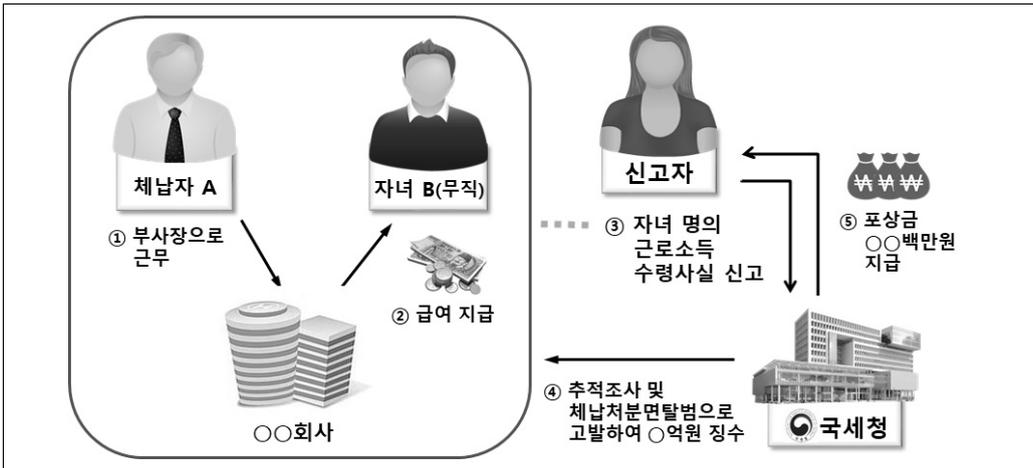
현 행	개정건의 내용
○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-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이상	○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- 징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

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내용 〉

- (’06. 4. 28.)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포상금 도입(한도 1억 원)
 - (’13. 1. 1.) 포상금 한도 증액(1억 원 → 10억 원)
 - (’14. 1. 1.) 포상금 한도 증액(10억 원 → 20억 원)
 - (’18. 2. 13.) 지급구간 세분화(5천만/5억/20억 → 5천만/5억/20억/30억) 및 지급률 상향 조정(5~15% → 5~20%)
- 고액·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 -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를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.

붙임 1 -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

사례 1 체납자의 근로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



□ 은닉재산 신고 내용

- 체납자 A가 세금을 체납하고 ○○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(29세)의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

□ 추적조사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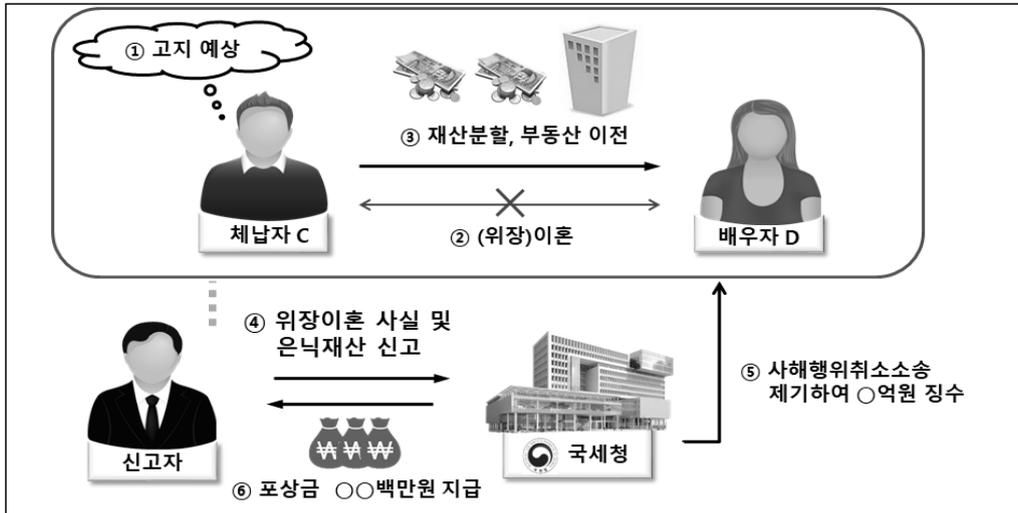
- 사전분석 결과 자녀 B가 ○○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
- 거주지에 대한 오랜 시간 잠복 및 탐문 결과 근무시간대에 A는 출근하고 B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
- 사무실에 A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되어 있고,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자녀 B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의 급여로 보아 압류 조치

□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

- A는 체납처분면탈범, 회사는 방조범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, 급여압류 후 A는 체납세액 약 ○억 원을 전액 자진납부
-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○○백만 원 지급

사례 2

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



□ 은닉재산 신고 내용

- 체납자 C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와 위장이혼하고, 부동산을 D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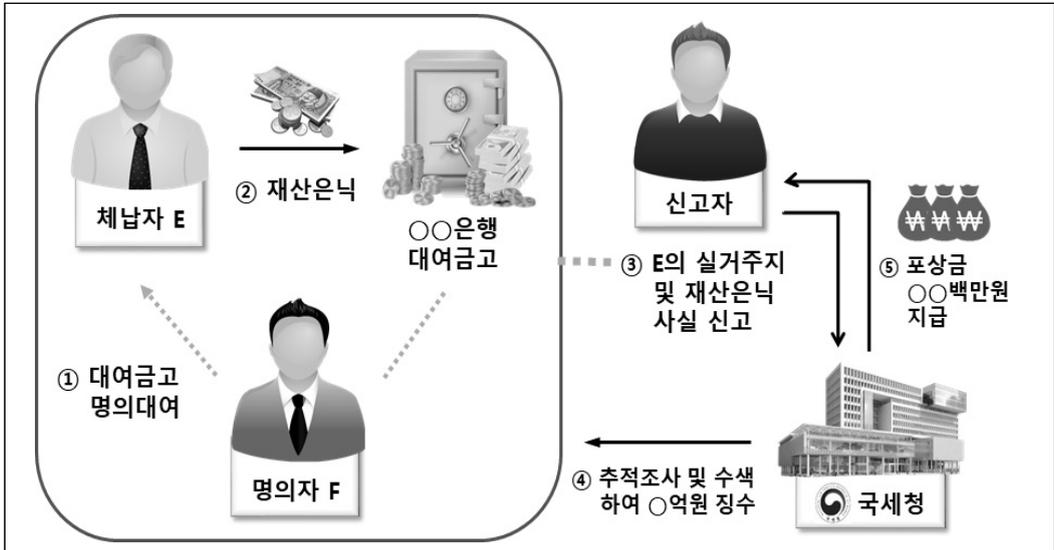
□ 추적조사 실시

- 사전분석 결과 C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,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
- 소비·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와 D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와 D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
-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을 D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은닉한 재산을 C 명의로 환원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

□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

-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을 C 명의로 환원하고 압류·공매를 통해 체납액 ○억 원을 징수하였으며, C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
- 위장이혼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○○백만 원 지급

사례 3 체납자가 차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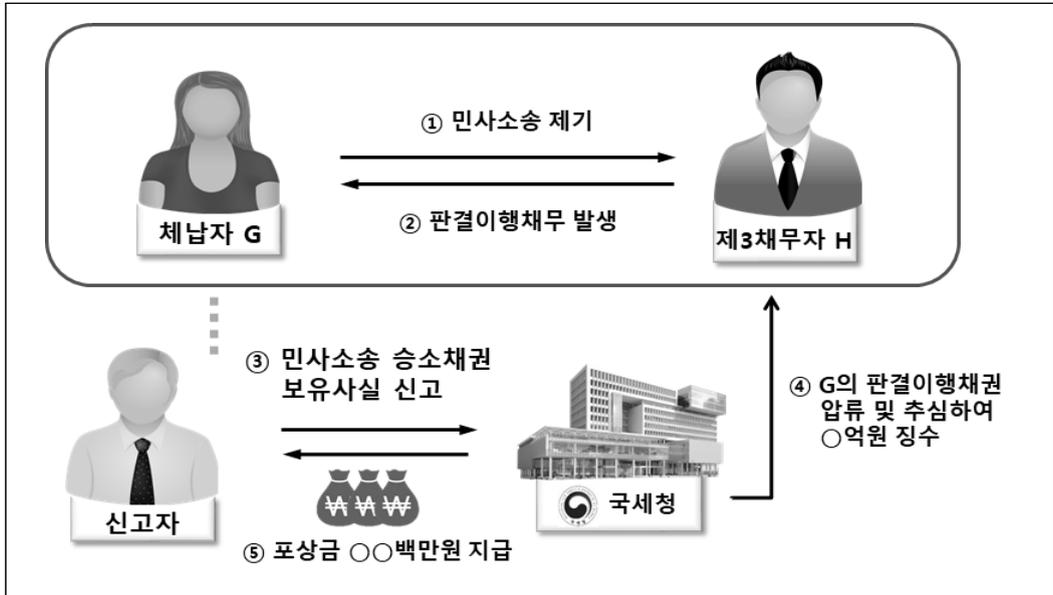


- 은닉재산 신고 내용
 - 체납자 E가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, 제3자 F 명의로 개설한 OO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신고

- 추적조사 실시
 - 사전분석 결과 대여금고에 대하여 제3자 명의 개설, 개설 은행, 금고에 보관 중인 금품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
 - OO은행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E가 해당 은행에서 차명의 대여금고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, 장기간의 탐문 및 잠복 등으로 E의 실거주지도 파악
 - 거주지와 대여금고 동시 수색을 통해 O억 원 상당의 수표, 현금, 골드바, 고가시계 등 압류

-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
 - 압류한 은닉재산을 추심 및 공매하여 O억 원을 징수
 - E의 실거주지와 이용차량, 대여금고 등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OO백만 원 지급

사례 4 체납자가 수령할 제3채무자의 소송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



- 은닉재산 신고 내용
 -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G가 제3채무자 H로부터 지급받을 ○억 원의 대여금 채권 관련 민사소송 진행 사실을 신고
- 추적조사 실시
 - 사전분석 결과 G가 H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진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내용의 신뢰성이 있어 체납자 G가 승소 시 채권 압류 등을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
 - 재판결과 G가 승소함에 따라 G의 ○억 원의 판결이행채권을 즉시 압류하고, H에게 조세채권에 따른 조기 추심 진행
 - 이후 금융정보조회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수표, 명품가방 등 압류
-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
 - H로부터 민사소송 판결이행채권 추심 및 수색을 통해 ○억 원 징수
 - 국세청이 확인할 수 없는 사인간의 채권을 신고하여 체납액 현금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○○백만 원 지급



붙임 2 -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고방법

① 국세청 누리집 (<https://www.nts.go.kr>)을 통한 신고

- ① 「국민소통」 → ② 「신고센터」 → ③ 「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」
- ④ 화면 하단의 「국민신문고 신청/접수하기」 선택
- ⑤ 본인 인증(휴대폰, 공인인증서 등) → ⑥ 신고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입력
- ⑦ 피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파일과 함께 제출

② 전화(ARS) 신고

○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를 통한 ARS 녹취 방식으로 유선신고

- ① 국번 없이 126 → ② 4번(탈세 등 각종제보) → ③ 1번(탈세신고) → ④ 피신고인의 이름(상호) 및 재산은닉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녹취

③ 서면 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

○ 은닉재산신고서를 작성(아래 서식 참조)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방문·우편·팩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출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

통 화 명	11월 13일 (금)	11월 16일 (월)	11월 17일 (화)	11월 18일 (수)	11월 19일 (목)
미 달 러 (USD)	1113.20	1115.10	1108.00	1106.80	1105.90
일 본 엔 (JPY)	1059.53	1065.40	1059.73	1062.34	1065.26
영 국 파 운 드 (GBP)	1460.63	1471.65	1464.11	1467.45	1467.36
캐 나 다 달 러 (CAD)	846.96	849.73	847.48	844.69	845.62
홍 콩 달 러 (HKD)	143.56	143.82	142.91	142.76	142.65
위 안 화 (CNH)	168.32	168.46	168.43	168.60	168.79
유 로 화 (EUR)	1314.41	1320.56	1313.92	1312.83	1310.82
호 주 달 러 (AUD)	805.23	811.35	811.00	807.41	807.86
싱 가 폴 달 러 (SGD)	825.11	827.29	823.58	824.52	823.92
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	269.51	270.49	269.10	269.66	270.56